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9

제출년월일 : 1999.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개정이유

농공단지에 대해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으나, 휴·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코자함(안제23조의4)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표준안 (1999. 1. 27 도세정 13400-134) 공문사본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가흥 농공단지
2. 봉현 농공단지
3. 적서 농공단지
4. 장수 농공단지
5. 휴천 농공단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乙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4(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

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

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

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가홍 농공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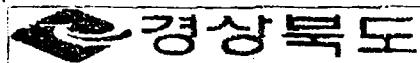
2. 봉현 농공단지

3. 적서 농공단지

4. 장수 농공단지

5. 휴천 농공단지

783 "관 인 생 략"

 경상북도

우편번호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 950-3712 / 전송 950-2219  
 세종로 과장 김선원 사무관 라준이 담당자 김연근

문서번호 세정 13400-124

선 결	과 장	7/11/19	7/11/19
접 일 자	pp. 1. 24	시	
시 간		결	시작일 7/11/19
수 번 호	8/7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김자경	임	

시행일자 1999. 1. 27 (30년)

결 을

수 선 시장·군수

참 조 지방세달당과장

제 목 :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13400-22(99. 1. 13)의 관련입니다.

2.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자에 대한 시군세감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을 복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되, 둘 개정안 증 감면세목, 감면기간, 감면대상 농공단지는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 안에서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둘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기간, 감면대상 농공단지는 추후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이 결정되는 즉시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나 그れ 아시기 바랍니다.

抄 象 :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전경 세정과장 김선원]

4

## □ 조례개정사유

### ○ 감사월 육월 16330-207('98.10.24)호로

-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면제되나  
신·폐업업체를 일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무설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 부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활성화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임
- 
- 현재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려면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지방세법 제276조로 개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 산업단지까지 감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감면조치가 없어도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확대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까지 감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감면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군·구 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시·군·구 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지역별 전통을 위한 감면"에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일자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  
지에 ○○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혹·폐업된 중장에 대  
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경해 농공단지내의 투농산에 내  
하여는 세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자 성립되는 날부터 각  
각 ○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농공단지

2. ○○ 농공단지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적용요령

- 1 각호에 규정하는 농공단지는 휴·폐업 업체가 증가하여 농공단  
지 활용화 대책이 필요한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열거 규정함
- 2 감면대상 기한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기한으로  
정하여 3~5년 이내로 함
- 3 감면기한은 최초입주자의 감면기한인 5년 범위안에서 정함

## 신·구조문대비표

&lt;시·군·구세장면조례&gt;

현	정	개정안
<신설>		
		<p>제○○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유·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농공단지</li> <li>2. ○○ 농공단지</li> </ol>

## 관 련 법령(발췌)

### 【지방세법】

- 제276조(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3) ~ (4) < 생략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공업 배치및광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입 법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172호('99. 4. 12) 게재
- 예고내용 : 별첨과 같음
- 예고기간 : 99. 4. 12 ~ 99. 5. 2(20일)
- 제출의견 : 없음

제 172 호

영 주 시 보

1999. 4. 12 (월)

영주시 공고 제 1999 - 96 호

영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12일

영 주 시 장 김 전 영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농공단지에 대해 서세를 감면함에 있어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으나, 휴·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설입지별 세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자가 취득하는 뒷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율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1999년 5월 2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청(환경·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39-612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37회 - 총무 제2차 부록)

문서번호	세무1300-119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99. 3. 12.

기 안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116	111111		111111	111111
회 조	지역경제과장 111111			

※ 가로수에 농업인증 흔적.

農工團地 活性化를 爲한

## 市稅 減免 擴大計劃

稅務課

12

## 農工團地 活性化를 爲한 市稅 減免 擴大計劃

농공단지에 대해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으나, 휴·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도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감면조례 개정)

### □ 農工團地 現況

(99. 3. 10 현재)

단지명	소재지	준공 년도	사업비 (백만원)	지정면적 (m <sup>2</sup> )	기업체 유형별 임체수					비 고
					개	가동	휴폐업	설립중	기타	
계	-	-	27,743	296,500	68	40	21(31%)	7	-	-
가 홍	상줄동 59	88	1,851	38,000	17	11	5(29%)	1	-	-
봉 흰	오현리 54	89	3,380	32,000	26	13	11(42%)	2	-	-
적 서	적서동 250	91	4,982	75,000	1	1	-	-	-	-
장 수	만구리 250	93	6,478	66,500	23	15	5(22%)	3	-	-
휴 친	적서동 123	97	11,052	85,000	1	-	-	1	-	-

### □ 現行 市稅 減免 現況 ( 지방세법 제276조 )

- 감면대상 : 최초로 입주하여 공장을 신축(증축)하는자
- 감면물건 : 공장용 부동산 ( 토자 · 건물 )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재산세, 종합토지세 : 5년간 50% 경감

\* 취득세, 등록세 100% 면제 ( 도세 )

## □ 減免擴大의 必要性

-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휴 · 폐업이 늘어남에 따라 농외소득 감소와 함께 농어촌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므로
- 휴 · 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시세를 감면하여 대체입주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감면시한 제한 필요

## 市稅減免 擴大(案)

- 행정자치부 표준안 -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일부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감면대상 기한을 3년 ~ 5년간 감면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 관내 5개 농공단지가 모두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과 입주자간 조세형평을 위하여 모든 농공단지에 대해 최대 허용기간(5년) 까지 감면하고자 함

- 감면대상 : 농공단지내 휴 · 폐업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 (토지 · 건물)
- 감면세목 :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 감면기간 :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자 ( 5년간 )
- 감면기한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 조치계획 : 입법예고후 조례 개정 · 시행